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영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54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.

발 의 자: 박영순 · 이용빈 · 진선미

이학영 · 안민석 · 문진석

임호선ㆍ허 영ㆍ황운하

김승남 • 박범계 • 이수진

조오섭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,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에 관한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(이하 "진료수가기준"이라 함)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이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은 각각의 요양급여나 보험급여에 대하여 기준을 수립하는 절차나 진료수가기준을 전문적으로 심의하여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반해,

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기준은 별도의 수립절차나 심의기구가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독임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진료수가기준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기 어려우며,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 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,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 예방 등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협의하여 구성한 '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'역시 진료수가기준 수립이나 조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엔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'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'를 두도록 하여,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토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1항·제3항 및 제15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고시할 수 있다"를 "고시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"를 "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에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 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,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15조의2(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) 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정책위원회"라하다)를 두다.

- 1.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·변경 등에 관한 사항
- 2.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조사·연구 및 연구결과의 갱신 등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

로 정하는 사항

-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4 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-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보험회사등의 단체가 추천하는 6명
- 2.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6명
- 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6명
 - 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명
 - 나.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1명
 - 다. 자동차보험·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 한 3명
 - 라. 소비자단체 등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1명
- ⑤ 정책위원회 위원(제4항제3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)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⑥ 정책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)	제15조(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	①
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	
장하고 보험회사등, 의료기관	
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	
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	
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	
기준(이하 "자동차보험진료수	
가기준"이라 한다)을 정하여	
고시할 수 있다.	고시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	③
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	
경하는 경우 <u>제17조에 따른 자</u>	<u>제15</u> 조의2제1항에
<u>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</u>	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
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후단	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
<u>신설></u>	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
	사전에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
	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
	들을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제15조의2(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
	책심의위원회) ① 자동차보험
	진료수가 정책에 관한 다음 각

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 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 (이하 "정책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·변경 등에 관한 사항
- 2.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조사·연구 및 연구결과의 갱 신 등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 토교통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 은 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 다.
-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토 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.
- 1. 보험회사등의 단체가 추천하

는 6명

- 2.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6명
- 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6명

 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

 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

 명

 - 다. 자동차보험·의료 또는 법
 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
 험이 풍부한 3명
 - 라. 소비자단체 등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업무를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있는 1명
- ⑤ 정책위원회 위원(제4항제3 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 다)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 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⑥ 정책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의2(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)제15조의3(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)(생 략)(현행 제15조의2와 같음)